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96 발의연월일: 2024. 7. 10.

발 의 자:김종양·김성원·박정하

고동진 • 김소희 • 송언석

윤한홍ㆍ이철규ㆍ김도읍

정동만 • 주호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시·도지사가 공장·창고가 밀집한 지역,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명령 등을 하며,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물이나 소화기 등 기존의 진화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리튬이온전지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 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하 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. 또한 「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」(소방청예규)에서 화재 위험성,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대상물 중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이 에 대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를 법 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화재안전시행계획에 새로운 화재진화기술 이용·보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함(안 제18조제1항제6호).
- 나. 소방관서장은 매년 화재 위험성,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소방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·관리하도록 함(안 제18조의2 신설).
- 다.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매년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18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1항제6호 중 "석유화학제품을"을 "석유화학제품 또는 리튬이 온전지를"로 한다.

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2(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의 지정) ① 소방관서장은 매년 특정 대상소방물 중 화재의 위험성,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소방물을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으로 지 정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지정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의3(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중 점관리대상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매년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
 - 2. 화재예방 · 대비 및 대응계획

- 3. 새로운 화재진화기술 이용 · 보급에 대한 사항
- 4. 우수 대상처 포상 및 정보관리에 대한 사항
- 5. 기타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화재안전중점과리대상 및 화재안전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수립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및 화재안전시행계획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수립된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및 화재안 전시행계획으로 본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8조(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제18조(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등) ① -----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 하여 관리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석유화학제품 또는 리튬이온 6.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 장이 있는 지역 전지를-----7. ~ 10. (생 략) 7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생 략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18조의2(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의 지정) ① 소방관서장은 매 년 특정대상소방물 중 화재의 위험성,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 한 특정대상소방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・관리 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중점 관리대상 지정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- 제18조의3(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소방관서장은 화대안전중점관리대상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매년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
 - 2. 화재예방·대비 및 대응계획
 3. 새로운 화재진화기술 이용· 보급에 대한 사항
 - 4. 우수 대상처 포상 및 정보관리에 대한 사항
 - 5. 기타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.